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20
------	-----

2019. 4.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월 17일, 홍성룡 의원(찬성의원 18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12월 2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 2.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심사보류)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 4.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홍성룡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규정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대비하여 수직적·종속적 구조를 나타낸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조례의 제명 및 조문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하고, 서울시의 위상 및 소속 공무원 사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종전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제명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변경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 나. 서울특별시 조례의 “지방”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고, 제명이 변경된 경우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3조~안 제41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조문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 사기를 제고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자치법규 일괄개정 사항

-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재 614건¹⁾의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나,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입법 기술적으로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괄정비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음.
 - 2003년 이후 모두 17회에 걸쳐 일괄정비 형식의 자치법규와 각종 위원회 정비 조례안이 제안되었고, 이 중 12건의 일괄 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

1) 서울시 조례와 규칙 등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 조례 604건, 규칙 224건, 훈령 29건, 예규 9건이 게재되어 있음(2019. 2. 18. 기준).

〈표 1〉 서울시 일괄조례 형식 조례 처리 현황

연 번	발의 일시	조 례 명	제안자	처리결과
1	2003. 2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시장	가결
2	2004. 1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시장	가결
3	2007. 1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4	2008. 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5	2008. 6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	의원	폐기
6	2009.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수정가결
7	2009. 10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수정가결
8	2010.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철회
9	2011.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철회
10	2014. 1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폐기
11	2015. 9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가결
12	2015.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	시장	폐기
13	2015. 1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	의원	가결
14	2016. 1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가결
15	2017. 10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가결
16	2018.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시장	가결
17	2018. 12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수정가결

- 일괄 정비 형식의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시차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방식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자치법규 정비를 가능케 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취지가 동일하고 개별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의안 심사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비교적 사소한 법령 개정사항이나 통합·개정되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조례안은 서울시의 위상과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40건의 조례에서 “지방”²⁾ 용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하고 있음(표2. 참조).

〈표 2〉 조례안의 주요 내용

개정사항		개정내용
1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공무원 복무 조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띄어쓰기 수정)
2	「공무원 복무조례」	-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 “올림픽·전국체전 등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로 변경함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지방청사 → 청사
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지방의회 의원 → 자치구 구의원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의회 → 구의회
6	「동물보호조례」	- 지방자치단체 → 자치구
7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 서울특별시의
8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서울연구원
9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 설립한 지방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 → 투자기관
10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임기제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 지방직영기업 →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
11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 → 공무원
12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13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기업 → 공기업
14	「개정공업지구 현자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사·공단
15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 지방공사 → 공사

2) ‘지방’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① 어느 방면의 땅, ② 서울 이외의 지역, ③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음.

개정사항		개정내용
16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사·공단 → 공사·공단
17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지방공기업 → 직영기업, 공사 및 공단(“시 산하 공기업”이라 약칭)
18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지방공기업 → 공기업
19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기업
20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 직영기업 → 시 직영기업
21	「난지도 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 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 지방공기업 → 공기업
22	「도시계획 조례」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사 및 공단
23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지방공기업 → 공기업
24	「성평등 기본조례」	- 지방공기업 → 공기업
2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
26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지방공기업 → 공기업
2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지방공사 → 공사
28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사 → 공사
29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기업 → 공기업
30	「재정운영 조례」	- 지방공기업 → 직영기업 및 공사
31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 지방공기업 → 공기업
32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 지방공사 → 공사
33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 지방공기업 → 공기업
3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조례」	- 지방공기업 → 공기업
35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 지방도매시장 → 시가 개설한 도매시장
36	「문화도시 기본조례」	- 지방문화원 → 문화원
37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문화원 → 문화원
38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서울기록원
39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지방공무원 → 공무원 - 지방공립대학 → 서울시립대학교
40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 이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수직적·종속적 구조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변화됨에 따라 중앙에 예측된 개념으로 인식되는 “지방”이란 용어를 일괄정비 하기 위한 것임.

-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강조되는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 예속적·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는 중앙과 지방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 다만, “지방”이란 용어가 법령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고 있고, 강원도를 제외한³⁾ 전국 16개 시·도의 조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용어 정비 후 중앙과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각종 정책과 사업에 혼선은 없는지 우선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조례의 용어는 가급적 관계 법령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치입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 관계 법령에서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지방도매시장”, “지방문화원” 등의 용어를 조례에서 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법령 체계상 혼란이 있을 수 있음.⁴⁾

3) 중앙에 예속된 “지방”이란 용어를 정비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 실현과 자치주권 강화를 위해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안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포함한 9건의 조례를 강원도의회가 일괄 개정함(2017. 2).

4)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한 종류인 반면,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임.
 -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자치구별로 1개의 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문화원”과는 다른 개념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 「없음」

가. 수정이유

- 지방이란 용어를 삭제할 경우 조문의 의미 변경 등으로 해석상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일부 조례의 제명과 조문이 개정된 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의 주요 내용

- 안 제2조(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를 삭제함.
- 안 제3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를 삭제함.
- 조례의 제명과 조문이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함(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안 제26조, 안 제28조, 안 제31조, 안 제35조).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0
----------	-----------

제안년월일 : 2019년 4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이란 용어를 삭제할 경우 조문의 의미 변경 등으로 해석상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일부 조례의 제명과 조문이 개정된 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안 제2조(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를 삭제함.
- 나. 안 제3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를 삭제함.
- 다. 안 제36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개정)를 삭제함.
- 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이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함(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안 제26조, 안 제28조, 안 제31조, 안 제35조).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5조 중 “자치구 구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안 제11조 중 “제5장제3항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를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2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감정노동”을 “감정노동”으로,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란”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

시”라 한다) 감정노동 사용자”란”으로,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를 “서울시의 사무위탁기관, 서울시”로 한다.

제4조 중 “시에 소재하는”을 “서울시에 소재하는”으로 한다.

안 제16조 중 “제11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 중 “시에서”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로, “지방공사”를 “공사”로 한다.”를 “제11조제2항 중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로 한다.”로 한다.

안 제18조 중 “제5조제1항 중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이 제4조”로 한다.”를 “제5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의”를 각각 “산하 공기업의”로 한다.”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을 “산하 공기업”으로 한다.

안 제20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26조 중 제5조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시가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안 제2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호”를 “제2조제3호”로 한다.

안 제31조 중 “공사”를 “공사·공단”으로 한다.

안 제35조 중 “제4조제3항 중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으로 한다.”를 “제4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36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2조(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p> <p><u>제22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제3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p> <p><u>제23조제9호 중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를 “등”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5조(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4항 전단 중 “지방의회 의원”을 “<u>자치구 구의원</u>”으로 한다.</p>	<p>제5조(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p> <p>-----</p> <p>-----</p> <p>-----.</p> <p>-----</p> <p>----- “<u>구의회 의원</u>”으로</p> <p>-----.</p>

제11조(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3항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임기제공무원” 을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제2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 을 “공기업” 으로,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 를 “서울시의 사무위탁기관, 서울시” 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2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 을 각각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라 한다) 감정노동” 을 “감정노동” 으로, “서울시” 를 “서울특별시” 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 란 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라 한다) 감정노동 사용자” 란 으로, “지방공기업” 을 “공기업” 으로,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 를 “서울시의 사무위탁기관, 서울시” 로 한다.

<신설>

제16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 중 “시에서” 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로, “지방공사” 를 “공사” 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5조제1항 중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 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이 제4조” 로 한다.

<신설>

제4조 중 “시에 소재하는” 을 “서울시에 소재하는” 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

-----.

제11조제2항 중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제정안과 같음)

제5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의” 를 각각 “산하 공기업의” 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 을 “산하 공기업” 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26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제28조(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서울특별시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

제20조(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안과 같음)

제26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

제28조(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

립한 공사” 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 사채” 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의 사채”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공기업” 을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 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으로 한다.

-----.

제31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

-----.

----- 공사·공단-----

----- 공사·공단-----

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제4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 을 “공기업” 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
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
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지방도매시장
의 경우 중도매인” 을 “중도매
인” 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전단 중 “지방도매
시장” 을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도매시장” 으로 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청사”를 “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청사”를 “청사”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지방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자치구”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서울특별시의”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설립한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을 “투자기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직영기업”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2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감정노동”을 “감정노동”으로,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란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감정노동 사용자”란”으로,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를 “서울시의 사무위탁기관, 서울시”로 한다.

제4조 중 “시에 소재하는”을 “서울시에 소재하는”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란 시가”를 “이란”으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공사·공단”을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 공사 및 공단(이하 “시 산하 공기업”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중 “지방공기업”을 “산하 공기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의”를 각각 “산하 공기업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을 “산하 공기업”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
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및”을 “서울특별시가 「지
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
관을”을 “출연기관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사 등에 적용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특별회계”란”을 ““특별회계”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의한 지방직영기업”을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으로 하고, 같
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3조 중 “지방 직영기업”을 “시 직영기업”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

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 또는”을 “공기업 또는”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공사 및 공단”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거나 출자한 공기업”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또는”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으로, “다른 지방공기업 또는”을 “따라 설립한”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제27조(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서울특별시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공사”를 “공사”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공기업”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 사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의 사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공기업”을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공사”를 “공사”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 사업”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의 사업”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6조 삭제

제37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지방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문화원의 육성”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지원)”을 “(문화원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문화원”을 각각 “문화원”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을 “(문화원의 기능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문화원”을 “자치구에 설립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지방문화원”을 각각 “문화원”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서울기록원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이하 “서울기록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지방공립대학”을 “서울시립대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